

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추가 신청 안내

1 추가 신청기간 운영

- (신청기간) '22. 5.23.(월) ~ 5.27.(금)
- (지원기준) '22. 1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공고일('22.3.14.)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장기요양요원*
 - *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, 치과위생사
- (신청대상) 장기요양정보시스템(업무포탈)에 대상으로 생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장기요양요원
- (신청방법)
 - (본인계좌)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 - ※ (전산)장기요양정보시스템>기타>돌봄인력 한시적지원>조회>대상자 선택>계좌정보 등 자료 입력>임시저장>전건 입력·저장 후 전송(최종1회)>조회(신청일 생성여부 확인)
 - (타인계좌) 이의신청서 작성, 팩스(033-749-9662)로 신청
 - ※ 제출자료: 이의신청서, 위임장, 위임자·수임자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
 - ※ 관련서식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공지사항), 장기요양정보시스템(기타>게시판>공지사항)
- (협조사항) 지원대상*으로 구축된 대상자는 '22. 1월 서비스 제공자 이므로 '22.3.14.기준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만 확인하여 지원금 신청
 - * 지원대상: 장기요양정보시스템>기타>돌봄인력 한시적지원>조회

2 이의신청 기간 운영

- (신청기간) '22. 5.23.(월) ~ '22. 5.27.(금)
- (신청대상)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로 급여비용 청구(인력) 신고 지연으로 대상자 생성에서 누락된 경우
- (신청방법) 이의신청서 작성, 팩스(033-749-9662)로 신청
 - ※ 이의신청서 작성 → 소속 장기요양기관 재직 확인 → 증빙자료 첨부 → 제출
- (증빙서류) '22. 1월분 급여제공내역 ... 급여제공기록지,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, 출근기록부 등